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8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 이덕영 (○○○○○○○-○○○○○○○○○), **
주거 경산시 ○○○○○○
등록기준지 영주시 ○○○○○○
항 소 인 검사
검 사 서○○(기소), 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김○○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고합363 판결
판 결 선 고 2026. 4. 2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를 형식적으로만

넘기고 다시 인수를 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총 9억 4,9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상시 하양읍 ○○○ ○○○에 있는 ○○○○○○를 운영하였던 사람이 고, 피해자 박○○은 피고인의 의과대학교 스승이자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 박○○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경 피고인의 초대로 위 ○○○○○○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새로 설립한 리○요양병원 운영으로 인해 ○○○○○○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26.부터 ○○○○○○ 제2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게 하던 중, 2022. 12. 말경부터 2023. 2. 초순경까지 피해자에게 “의사는 명의상 두 병원의 대표를 맡을 수 없으니 아버님이 ○○○○○○의원 대표 원장을 형식적으로 맡아 주면 함께 진료하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 형식적으로 양수도 계약서(이하 이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양도양수하는 외관을 갖추는 게 좋겠다. 아버님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받은 돈을 송금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외관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3. 2. 13.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못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의 사위이자 피고인의 친구이기도 하며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소속 의사인 박○○을 만나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으면 나중에 못 갚아도 기금에서 책임을 진다. 아버님은

자리에 앉아만 계셔도 월급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잘 운영하겠다. 2년 뒤에 리○ 요양병원이 정상에 오르면 ○○○○○○를 다시 인수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박○○은 그 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년 이전 자신이 운영하던 ○○○○○○를 위 박○○을 비롯한 다른 의사들에게 금 8억 원에 양도하려고 하였지만 의사들이 그 가격으로 양수하려고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위 ○○○○○○를 위 금액에 양도할 의도가 생겼고, 피고인이 새로 운영하게 된 리○요양병원이 정상화되더라도 ○○○○○○를 다시 피해자로부터 양수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3. 2. 20.경 경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도 형식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 병원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임차인을 피해자, 임차보증금을 1억 원, 월차임을 500만 원(부가세 별도), 임차 기간을 2023. 2. 23.부터 2028.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이하 이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구은행으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2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63810104*****)로 금 1억 원,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3010295*****)로 금 8억 원, 합계금 9억 원을 위 ○○○○○○ 양도양수대금 및 ○○○○○○ 병원의 건물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위와 같이 ○○○○○○를 양수하며 그에 따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로부터 2023. 3.경부터 2024. 1.경까지 위 ○○○○○○의 월차임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 합계금 4,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9억 4,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 및 임대차계약이 형식적 계약”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고, “피고인이 ○○○○○○를 다시 피해자로부터 인수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년 뒤에 리○요양병원이 정상에 오르면 다시 인수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양도양수대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의 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이 사건 양수도계약 및 임대차계약이 형식적 계약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및 임대차계약이 형식적 계약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양수도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통해 피해자가 ○○○○○○를 인수하여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해자의 아들 박○길에게 2023. 9. 19.경 입출금 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처가 위 병원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자계좌의 은행 보안카드(OTP)를 보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입출금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관한 2023. 1. 31.자 약정서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공증인 앞에서 자인하였고, 의사 창업자금 대출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지점 및 아이엠뱅크 지점에 각 방문하여 신용보증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면서 자필로 그 내용을 인지하였음을 기재하였다.

피해자가 비록 고령이기는 하나 2022. 12. 26.경부터 ○○○○○○에서 의사로 진료를 보는 등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직업 및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고, 과거 병원 건물주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고 진료행위를 한 의료법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아 혐의없음 내사종결 된 피해자의 특수한 경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법률적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컴퓨터로 작성한 메모 및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자계좌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입출금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였고, 위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 3장을 소지하면서 2023. 4. 11. 500만 원, 2023. 4. 12. 500만 원을 출금하는 등 2023. 3.경부터 2023. 9.경까지 63회에 걸쳐 합계 63,933,357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해당 시기 병원장으로서의 수입 및 개인비용 지출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전에 약정하거나 사후에 승인을 받은 사실은 없다), 2023. 9. 23.경 박○○을 ○○○○○○ 비상근의사로 등록하고, 2023. 9. 27.경 피고인에게 ‘10월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구두로 통보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를 운영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들이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5. 3. 12. 1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24가소1614호).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재인수를 약정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장래에 ○○○○○○의 재인수 내지 대표자 명의를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여 피해자가 병원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관한 문서에는 피고인이 장래에 ○○○○○○를 재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 논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리○요양병원이 정상화되면 다시 ○○○○○○를 인수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으나 그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그것이 계약의 조건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박○○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2년이라고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 전이라도 피해자가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제자 된 도리로서 ○○○○○○에 원상 복귀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박○○의 법정진술과 피고인과 박○○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관련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자의 손해나 불편함이 없도록 피고인이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 것을 넘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의 재인수에 관하여 그 시기와 조건, 인수금액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후 2023. 3. 25.경부터 2023. 4. 1.까지 ○○○○○○의 직원 4명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2023. 4. 초 경 ○○○○○○ 건물 외부 리모델링 공사 견적 및 디자인 시안을 의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으며, 2023. 4. 8. 건물 외부 리모델링 비용 등 명목으로 이 사건 사업자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전에 발생한 비용의 정산 및 의료기기 처분 등에 관한 박○○의 요청에 협조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양도양수대금 8억 원 등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운영하는 리○요양병원이 정상화되는 등 ○○○○○○ 재인수 약정 내지 그러한 논의의 전제가 된 조건이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처음부터 ○○○○○○를 다시 인수할 생각이 없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 86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범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가끔씩 ○○○○○○ 제2진료실의 컴퓨터에 자신의 생각을 메모한 파일을 저장하여 두었는데, 그 메모¹⁾ 중에는 "내 전 재산일수도 있는데, 9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고, 9억을 얼마 동안에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 "Tax 절감을 위해 공유할 전략이 무엇일까? 세무사에게만 맡겨 놓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등 피해자가 ○○○○○○ 병원을 실제로 양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메모가 발견된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차료 지급소송의 제1심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소를 하였으나, 2026. 4.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피해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5나 302113호).

1) 증거기록 409~414쪽

③ 검사는 피해자가 "2년 뒤에 리○요양병원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
○를 다시 인수할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합계금 9억
4,900만 원을 송금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 피해자가 병원을 재인수하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에 관하여 이면합의서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
적일 것인데, 이 사건 양수도계약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인수 약정을 명기한 처분문서
가 작성되지 않은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재인수의 기한
을 정하지는 않았고 재인수가 양수도계약의 조건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박○식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기를 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병원을 운영할 수 없
는 상황이 되면 제자 된 도리로서 ○○○○○○를 재인수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를 양수함에 있어서 전제조건으로 삼을 정도
로 피고인의 병원 재인수가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필수 조건이었다고 보기는 어
려운 점, ㉢ 피해자는 2023. 9. 27.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10월부터 출근
하지 말라"고 구두로 통보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 재인수를 믿고서
병원을 양수하였다면, 장차 병원을 재인수할 피고인을 봉직의사에서 중도에 해고하는
조치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
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를 재인수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
다는 기망행위와 위 9억 4,900만 원 송금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
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성욱 _____

 판사 왕해진 _____

 판사 송민화 _____